

▶ 목 차

1. 관련법령
2. 자기주식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3. 자기주식 소각시의 세무회계처리

▶ 1. 관련법령

자기주식(treasury stock)은 주식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1) 상법의 규정

2011.4.14. 개정 전의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되, 회사의 합병이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취득을 허용하였다.

2011.4.14. 상법의 개정을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였다.

동 상법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4.15.부터 시행하고 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341 ①).

①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 상법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상법 시행령 9 ①)

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이것을 ‘배당가능이익’ 이라고 한다(상법 345 ④ 단서).

배당가능이익(상법 462 ①, 상법 시행령 19)

배당가능이익 =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상법 제446조의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商界)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과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과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상법 446의2).

(2)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등

①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 341 ③).

② 이사의 배상책임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위 ‘(1)’ 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상법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341 ④).

(3)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의 절차

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상법 제341조 위 ‘(1)’ 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341 ②).

- 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② 자기주식 취득방법의 구체적 절차 등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상법 시행령 9 ① 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상법 시행령 10).

가. 상법 제341조 제2항(위 ‘(3)’ 의 ‘①’)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나.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위 ‘가’ 의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라. 주주가 위 ‘다’ 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위 ‘가’ 의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4)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341의2).

-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참고]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상법규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 (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34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①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②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①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기주식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자본시장법 165의3)

-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1.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방법
 - 2.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②위 ‘①’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 ③주권상장법인은 위 ‘①’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④주권상장법인은 위 ‘①’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

- ①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 가.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부터 과거 1개월간
- 나.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 다.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 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 마.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 바.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라)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레)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 (러)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사)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 (사)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아래 ‘(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 (재)위 ‘(사)’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에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 (재)자기주식의 취득일부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에탁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재)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⑤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위 ‘②의 가부터 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권리 등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369 ②).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371 ①).

아울러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권도 없고, 신주인수권리도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4) 법률에 위배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1) 대법원 판례(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그러므로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대법원96다12726, 1996.06.25.) 판결],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64마719, 1964.11.12.) 결정 참조].

위 판례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가 될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자기주식을 반환하고 매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례

아래의 유권해석 등으로 보아 상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면 가지급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 ①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796, 2010.12.02.) (법인세과-1148, 2010.12.09.).
- ② 처분청의 재산세과에서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유효임을 전제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이에 대한 직권취소 등의 처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3중788, 2013.06.25.).
- ③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그 과정에서 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나머지 주주는 한○○○의 아들 또는 아들이 주식을 전부 소유한 회사 그리고 청구법인의 자회사이다)는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한○○○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한○○○는 쟁점주식 외에도 2014년과 2015년에 청구법인에게 보유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양도하였고 당시에도 다른 주주는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마이너스통장)을 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령의 한○○○가 상속재산이 될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양도하면 경영권을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나머지 보유주식이 상속될 경우 할증평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고령의 한○○○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6서1700, 2016.07.07.).

※ 참고로 본 사건은 행정심판(서울행법2016구합73658, 2017.01.20.)을 거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다. 그 최종판결은 2017.7.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이익의 배당)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①
 2.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으로 정하는 방법** ②
-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이익의 배당)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이익의 배당)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 상법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 ① 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부터 제146조(조사 및 조치)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법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③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5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6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회사의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 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서 그 무자력의 입증에 있다.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1292)

▣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01.7.2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1.7.24.]

[본조신설 84·4·10]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전속관할)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이익의 배당)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2011.06.03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2010.12.30 개정)

가.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2010.12.30 개정)

7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8.12.24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3. 의제배당(擬制配當)(2009.12.31 개정)

-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으로 정하는 것(2012.01.0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2009.12.31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① 법 제17조(배당소득)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2010.06.08 개정)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2000.12.29 개정)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법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법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법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2016.02.17 개정)

다.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2005.02.19 법령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2010.06.08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2010.06.08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1998.12.31 개정)

$$\text{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frac{\text{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1 + \text{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는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2013.02.15 개정)

$$\text{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frac{\text{주식소각 등이 있는 이후의 취득가액합계}}{\text{주식소각 등이 있는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2.04.13 개정)

⑤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2005.02.19 법령개정)

$$\text{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 \frac{\text{「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text{자산재평가차액}}$$

⑥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1.02.17 개정)